

■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6. 3. 20.>

농·임·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
(년 기)

(앞쪽)

※ 관리번호			처리기간 20일		
신청인· 환급대상자	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(본점 소재지)		전화번호		
① 대상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					
구입연월일	품목	수량	금액		
			② 구입가액	③ 환급신청액 (부가가치세)	④ 합계 (②+③)
합 계					
환급금계좌신고	거래은행	은행	지점	계좌번호	

위와 같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의2제3항 및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환급대행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	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	수수료 없음
	1.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: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. 환급신청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: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. 환급신청명세서	1.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(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가. 통·이장,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나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(환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)	

작성방법

이 신청서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.

1. (년 기)란은 매분기를 각 기수로 합니다(1/4분기→제1기, 2/4분기→제2기, 3/4분기→제3기, 4/4분기→제4기).
2. ※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3. ① 대상기간란은 농··임·어업용기자재 환급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.
4. 환급대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란 중 ② 구입가액, ③ 환급신청액(부가가치세), ④ 합계란만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